

직장여성 탁아비 소득세서 공제를 조세학회 학술발표회

기혼 직장여성의 탁아비를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가사노동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평가를 세법에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대 호암생 활관에서 열린 한국조세학회(회장 박대원) 학술발표회에서 '남녀평등과 조세정책'을 발표한 최광 교수(외대·법학)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사람만 일하는 부부에 비해 추가로 드는 교통비·점심값·탁아비·가사노동 대체비 등이 세금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직장 여성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의 경우 네덜란드는 맞벌이 부모에게 탁아비를 공제해주고 있고, 캐나다는 어린이 1인당 6살 이하는 4천 달러, 7~14살은 2천달러를 탁아비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미국은 어린이 2명까지 1인당 2천4백달러씩 공제하고 있다.

최 교수는 △주부의 재산취득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 △30살 이상의 세대주가 주택을 살 때 2억원까지, 세대주가 아닌 25살 이상인 남자는 2천만원까지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되는 데 비해 여자의 경우 5백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조사하는 것은 "잘못된 세법 운용"이라면서 "이런 남녀 차별적인 자금출처 조사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여성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안을 연구해 세법에 반영하는 한편 이혼할 때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분할률도 합리적으로 나누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최 교수는 제안했다.

第21402號

☆서울版☆

【第3種郵便物(가)급認可】 동91.3.2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영유아들을 돌보고 있는 시립탁아소들이 수탁 시간대가 짧고 법정영세민의 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저소득층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 주부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단돈 7시반하는 경우 대개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되는 시립탁아소에 자녀들을 맡기지 못하고 비영리 민간탁아소를 이용하거나 친척집이나 가정에 방치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돌보유시간을 부모와 탁아소운영자가 협의해 12시간 초과시 추가비용을 받고 아동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시립탁아소는 인력난으로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세민 기준 완화해 혜택 넓혀야”

人力달려 늦게門 열고 일찍 닫아

또 시립탁아소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부조대상자의 자녀를 50%한도 내에서 우선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탁아대 상 자녀를 지닌 부모들은 대개 절기 때문에 신체질환이나 부상이 없는 경우 탁아비를 면제받는 생활보호 의료부조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주부 김모씨(31·여·서울 용산구 신림동)는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일을 하는 막노동 을 하고 있어 5세된 아들을 시립탁아소에 맡기려 했으나 시간대가 맞지 않아 시설이 빈약한 비영리민간탁아소에 아들을 맡겼다”고 말했다.

도봉구 청가정복지과 鄭用奎계장은 “탁아대상아동을 지닌 부모는 대개 30대가 많아 법정영세민에 속하기는 힘들다면서 『법정영세민의 기준을 높여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립탁아소들은 경 영난으로 탁아시간연장이 나 탁아비면제대상은 불가 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특별시 북부종합사회 복지관 金鍾吉관장은 “정부와 공공단체의 지원금을 받고 있 으나 운영비에도 부족한 액 수”라며 “『초월 24만원에 시간이상 일해야 하는 조건때 문에 보육사 확보도 힘든 실 정』이라고 말했다.

市立탁아소 제구실못해